

◎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23-447호

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」 제34조의2에 따라 안전성검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안전인증기관 등 지정 및 심사 가이드 일부개정(안)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23년 10월 19일

국가기술표준원장

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기관 등 지정 및 심사 가이드 일부개정(안) 고시

1. 개정 이유

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」이 시행(‘23.10.19, 개정(‘22.10.18.)됨에 따라 하위법규 개정 추진

2. 주요 내용

가. 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」 제34조의2(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등)에 따라 안전성검사제도가 도입과 더불어, “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 및 심사 가이드”를 “안전인증기관등* 지정 및 심사 가이드”로 개정

* 안전인증기관, 안전확인시험기관 및 안전성검사기관을 ‘안전인증기관등’이라 한다.

나. 종전의 안전확인시험기관에 대한 지정 및 심사 가이드를 안전인증기관 및 안전성검사기관을 포함한 ‘안전인증기관등 지정 및 심사 가이드’로 개정

- 안전인증기관 및 안전성검사기관에 대한 근거조항 추가(제1조~제24조): 법 제4조(안전인증기관의 지정 등), 제14조(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 등), 제34조의2(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등) 등
- 별표 및 별지서식에 안전인증기관, 안전확인시험기관, 안전성검사기관 추가 등

부 칙

이 고시는 고시한날부터 시행한다.

※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(www.kats.go.kr → 고시·공고)